

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기준 변경 공고

「관세법」 제173조 제3항 및 「관세법시행령」 제187조의4 제1항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함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24일

관 세 청 장

- 아 래 -

- (변경) 지급금액을 현재의 60%로 하향 조정
- (배경) 전년대비 예산감액 편성, 코로나19 종식 및 마약밀반입 증가 등에 따른 검사수요의 급증으로 예산 조기 소진 예상
- (사유) 금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함
- (시행) '23년 9월 1일 검사비용 지원 신청건 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적용
* 예산 소진 이후 신청건은 제한될 수 있음

□ 주요 내용

○ (대상업체)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
* 체납자는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 지원 가능

** 대상유형 :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(지원가능)

○ (검사유형) 수입 :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, ② 부두직통관 검사

수출 : ③ 적재지 검사, ④ 신고지 검사(중고차, 생활플라스틱폐기물)*

* '21.11.부터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

○ (대상물품) 컨테이너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, 검사결과,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이 없고,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

○ (비용항목) 컨테이너 운송료, 컨테이너상.하차료, 컨테이너 내장 물품적출·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
○ (신청인)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·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

○ (사업예산) ('20년) 71.3억원, ('21년) 86.3억원, ('22년) 68억원,
('23년) 62억원

※ 문의 사항 :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☎ 02-2107-2533, 2534
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☎ 042-481-1142

붙임 2 | 검사비용 지급 예시 설명

□ 검사비용 지급 조정금액

- 화주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후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급심사*를 거친 지급예정금액의 60%만 지급

* 지급상한금액과 지원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금액 결정

□ 검사종류별 지급사례(예시)

- ① 화주 A가 부두직통관화물 검사에서 40피트 컨테이너를 전량 적출하여 검사비용 지원금액을 150만원으로 신청하였다.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급심사 결과 해당 검사종류에는 지급 상한이 120만원이어서 기존에는 화주A가 지급상한금액인 120만원을 지원받았다. 하지만, 지급기준 조정이후에는 72만원을 지급 받는다.
- ② 화주 B가 관리대상화물 검사에서 20피트 컨테이너에 대해 검색기 및 개장 검사를 진행하여 검사비용 지원금액을 30만원으로 신청하였다.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급심사에서 지급상한은 40만원으로 확인되어 기존에는 화주 B가 30만원을 지원 받았었다. 하지만, 지급기준 조정이후에는 18만원을 지급받는다.
- ③ 화주 C가 적재지검사화물 검사에서 40피트 컨테이너에 대해 검색기 검사를 진행하고, 검사비용 지원을 10만원으로 신청하였다.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급심사에서 지급상한은 13만원으로 확인되어 기존에는 화주 C가 10만원으로 지원받았었다. 하지만, 지급기준 조정이후에는 6만원을 지급 받는다.

붙임 3

검사비용 지원사업 지급 변경 관련 규정

□ 관세법

제173조(세관검사장)

-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·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(이하 이 항에서 "검사비용"이라 한다)은 화주가 부담한다. 다만, 국가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「대외무역법」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**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**

□ 관세법시행령

제187조의4(세관검사장)

-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"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「대외무역법」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.

5.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□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
제7조(지원대상 검사비용)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5조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(이하 "항목별 검사비용"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하되, **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**

1. 컨테이너 운송료
2. 컨테이너 상·하차료
3. 컨테이너 내장(內藏)물품 적출·입료

제8조(검사비용 지급액 등) ② 관세청장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
- ③ 검사비용 지급액은 제2항에 따라 세관별로 조사된 컨테이너 검사비용과 **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, 제7조에 따른 항목별 검사비용에 대하여 화주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으로 산정한다.** 다만, 세관별로 조사한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